#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13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김정재·박덕흠·김승수

서명옥 · 배준영 · 박충권

조지연 · 최은석 · 김성원

김선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로, "법률 상담을"을 "법률 상담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 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 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 영 등) ①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 -----학교폭력이 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 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 우 또는 <u>그 밖에</u>-----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 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법률 상담 등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 <신 설> 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 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 략)